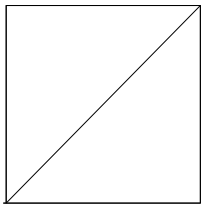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22 - 2호
보 고 연 월 일	2022. 1. 24. (제114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제144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I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2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2

2.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2

II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적용 범위, 설정 대상 범죄군 ····· 38

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심의 내용 ····· 38

2.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 ····· 40

3.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대상 ····· 42

4. 벌금형 양형기준의 양형자료 조사 범위 ····· 46

5. 검토 결과 요약 ····· 48

IV. 향후 일정 ····· 49

【별첨】

■ 이재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최재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 백광균,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Ⅱ”

■ 유관모,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Ⅱ”

Ⅰ. 제14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2. 1. 10.(월) 15:3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2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벌금형 양형기준」설정 원칙 Ⅱ (적용 범위, 설정 대상)

Ⅱ.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결과

○ 양형위원회 제112차, 제113차 정기회의에서 심의된 설정 범위,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01 | 체포·감금 (변동 없음)

02 | 유기·학대 (변동 없음)

03 |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유형의 정의]

01 | 체포·감금 (변동 없음)

02 |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를 삭제하는 외에는 변동 없음

03 |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등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72조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치사 · 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나. 중유형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1) 검토 방향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등에 비추어 현행 유기·학대범죄(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를 토대로 하되,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내용,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가)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1)]

○ 일반 유기・학대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 인자
전체	5	5	1	2	1	6	10
	33.3%	33.3%	6.7%	13.3%	6.7%	40.0%	66.7%

- 20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15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6.7%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40.0% = 가중영역 40.0% > 감경영역 20.0%

1)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김세종)' 참조, 이하 같음

○ 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전체	300	5	5	26	47	9	4	204
	46.4%	0.8%	0.8%	4.0%	7.3%	1.4%	0.6%	31.5%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	동종 누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전체	8	68	51	7	177	36	347
	1.2%	10.5%	7.9%	1.1%	27.4%	5.6%	53.6%

- 1,093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647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53.6%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60.8% > 감경영역 21.8% > 가중영역 17.4%

(나) 아동학대범죄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수정

○ 이번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매매 등을 추가함

○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양형실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함

(2) 검토 결과 요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 **녹색** 표시는 의견 불일치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인자			**한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검토 결과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①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중한 경우

○ 성적 학대가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된 점, 성적 학대 구성요건의 개념 범위 및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의규정의 예시에 성적 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2)]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에서 **파란색** 부분 추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 ·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 · 파출소 · 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 · 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양형인자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에서 **파란색** 부분 추가, 붉은색 및 삭선 부분 삭제(이하 같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 내용(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을 참고함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 · 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형법 제11조가 2020. 12. 8. 개정되었고(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위 개정 이후 신설 또는 수정된 범죄군(주거침입범죄 등)에서도 위 개정 내용을 반영

③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 유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학대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 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는 형법상 유기·학대, 살인 등의 가중적 처벌규정으로 그 보호법익, 범죄의 성질,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 포함된 범죄들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1 범죄군)에 해당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대유형 1(체포·감금), 2(유기·학대)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대유형 3(아동학대)**의 경우 유사한 형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양형정책적 차원에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1-2 범죄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질적 구분

-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족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나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된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 2018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유지된 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아동학대범죄에서 유독 그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의사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도 엄격한 양형조사, 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정의 규정 불필요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의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④ 진지한 반성

○ 양형인자의 남용 등에 우려, 현행 양형기준상 위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현황과 내용[3]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정요

3)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에서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

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 정의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 정의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누범 및 전과에서 '동종'의 범위

○ 성적 학대(2유형) 구성요건의 유형(음행강요·매매·성희롱 등)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 표현

- 특별양형인자 중 '동종 누범'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중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⑦ 상습범인 경우

○ 아동복지법 제72조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는 적용되지 아니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2018년 양형기준 수정 시 대유형 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일반가중인자로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

○ 아동학대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폭력 성행의 발현이라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범죄, 성범죄 등과 같이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서술식 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① 양형인자의 위상

○ **다수 의견(8인) : 특별감경인자로 둠**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응되는 인자로서, 그 균형상 특별감경인자로 두어야 함.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음. 소수 의견의 취지는 양형인자의 정의를 가다듬어 달성할 수 있으므로, 양형인자의 위상은 특별감경인자로 둠이 타당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아예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별하여, 그 동기를 크게 반영하고 있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에게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로 동기 요소를 특별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u>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둠</u>

- 폭력범죄, 살인범죄, 성범죄 등 양형기준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감경요소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무방비 상태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가해자의 80% 이상이 '보호자'로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점, 폭력·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감경요소가 아닌 점, 권고형량 자체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감경인자로 정함이 타당함

② 양형인자의 정의 중 '단순 훈육, 교육 등 제한 조항' 추가 여부

○ <u>다수 의견(7인) : '단순 훈육, 교육 등 제한 조항' 추가</u>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의 삭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정의규정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의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아동학대 범죄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주의적으로라도 이를 규정함이 타당함
- 다수 의견에 의할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규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간호)[4]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5]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수 의견(4인) : '단순 훈육, 교육 등 제한 조항' 삭제**

- 그 아래 예시 규정을 읽어보면 단순 훈육, 교육 목적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굳이 '단순 훈육, 교육 등 제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음
-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표현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소수 의견에 의할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규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보호'라고 표현할지 '간호'라고 표현할지가 아래 ③ 쟁점임. 이하 같음
5) 이 예시를 유지할지 삭제할지가 아래 ④ 쟁점임. 이하 같음

③ 양형인자의 정의 중 첫 번째 예시 규정

○ **다수 의견(6인) :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 '간호'라는 표현은 형법상 유기죄, 학대죄의 객체인 질병을 앓아 간호를 받아야 하는 성인 피해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에 어울리는 표현인 '보호'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호' 대신 '보호'로 표현함이 타당함
- 다수 의견에 의할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중 첫 번째 예시 규정

>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소수 의견(5인)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 '간호'라는 표현은 종전 유기·학대 대유형의 양형인자 정의 중 첫 번째 예시로 쓰이던 것으로, 이를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음
- '간호' 표현 대신 '보호'로 한다면 오히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 가능성이 너무 커지므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이상 그 해당 범위를 가급적 좁게 규정함이 타당함
- 소수 의견에 의할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중 첫 번째 예시 규정

>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④ 양형인자의 정의 중 두 번째 예시 규정

○ <u>다수 의견(7인) : 두 번째 예시 규정 존치</u>

- 현행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영유아가 아닌 이상 피해자인 아동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음.
- 두 번째 예시 규정을 둠으로써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적용 범위를 줄일 수 있음. 즉, 성립 범위가 작을 두 번째 예시 규정을 두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도 두 번째 예시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드러낼 수 있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중 두 번째 예시 규정

>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u>소수 의견(4인) : 두 번째 예시 규정 삭제</u>

- 두 번째 예시 규정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기·학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상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아동'으로 한정되는 아동학대 범행의 동기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움

다. 중유형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1) 검토 방향

○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내용 등에 비추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의 양형인자를 토대로 하되,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내용,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가) 양형실무상 특별양형인자 및 영역의 분포

○ 아동학대중상해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학대의 정도가 중	특별가중 인자
전체	4	4	1	2	3	6
	40.0%	40.0%	10.0%	20.0%	30.0%	60.0%

- 11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10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0.0%로 더 많았음
- 기본영역 45.4% > 가중영역 27.3% = 감경영역 27.3%

○ 아동학대치사

	특별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	학대의 정도가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 인자
전체	26	11	1	3	3	3	5	7	3	31	2	43
	37.7%	15.9%	1.4%	4.3%	4.3%	4.3%	7.2%	10.1%	4.3%	44.9%	2.9%	62.3%

- 56건 중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된 빈도는 69번인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 경우가 62.3%로 더 많았음
- 가중영역 55.4% > 감경영역 33.9% > 기본영역 10.7%

(나) 아동학대범죄 범죄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수정

○ 이번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양형실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함

(2) 검토 결과 요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양형인자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 **녹색** 표시는 의견 불일치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2, 3유형)**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자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2, 3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검토 결과 상세: 중유형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논의가 동일한 부분은 생략함

① 범행 후 구호 후송

○ ‘범행 후 구호 후송’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 살인범죄, 강간치사범죄 등에서 위 양형인자를 일반감경인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 등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②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의 기본범죄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인바, 기존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다른 행위 태양도 포함되도록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명칭을 수정하고, 정의규정의 예시에 위 기본범죄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양형인자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사체손괴, 사체유기

○ 아동학대살해 구성요건 신설 전 적용되던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경합)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사체손괴와의 이종경합범 사안으로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살인범죄에서 사체손괴를 특별가중인자로, 사체유기를 일반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양형인자 수정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 ☞ 합의 관련 양형 요소 정비원칙에서 정한 정의 규정 적용

>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상습범인 경우

○ 대유형 2 유기·학대 중 가. 일반적 기준 「유형의 정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가 제외되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만 남기고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는 삭제함이 타당

○ 대유형 2 유기·학대 중 가.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수정

>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3)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

○ 대유형 1 체포·감금의 서술식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파란색** 표시 부분 추가)

-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경향범적 특성이 강함을 고려하고, 대유형 3 아동학대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과의 균형 도모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관련 서술식 기준이 생략되어 있었으므로,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3 아동학대에서의 것과 동일한 취지의 서술식 기준을 추가함이 타당함

(4)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종전 '농아자'로 표현되어 있던 양형인자를 형법 개정에 맞추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함

마. 대유형 3 아동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수정

(1) 요약

※ **파란색** 표시는 기존 집행유예 기준표에 추가된 부분 / 붉은색 및 삭선 표시는 기존 집행유예 기준표에서 삭제되는 부분 / **녹색** 표시는 의견 불일치 부분

03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벌불원**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구분	부정적	긍정적
	로 한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기존 집행유예 기준에서 변경된 부분(의견 일치)

(가) 집행유예 기준 적용 범위

○ 살인범죄의 경우 미수 외에 집행유예 기준이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집행유예 기준표에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라고 표시함

(나) '피고인이 고령' 삭제

○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와 차등을 두어 '피고인이 고령'을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함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u>다수 의견(8인)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을 일반 부정적 참작</u>

사유로 반영함

- 집행유예 기준과 양형인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없다면 반성이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부정 사유로 두어야 함

○ **소수 의견(3인):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을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로 반영하지 않음**

-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피해는 존재하는 것이 기본 값이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부정 사유로 반영하게 되면 범죄 발생 그 자체로 집행유예 부정 사유가 있는 것임. '피해 회복 노력'을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을 집행유예 부정 사유로 볼 수는 없음

(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다수 의견(9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집행유예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과도 연계되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지는 형의 경중을 정하는데 고려할 수는 없더라도, 형을 당장 집행할지 또는 유예할지를 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 타당함
- 대부분 양형기준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그 삭제가 검토되어야 함

○ **소수 의견(2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지 않음**

- 가정 구성원 내부 범죄 발생 시, 통상 외부로 드러나는 범

죄자의 인격과 가정 내부에서 나타나는 인격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은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죄를 감추거나 오랫동안 지속하였을 가능성도 큼

(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수 의견(7인) : 소수 의견 주장 괄호 문구를 추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만으로 표현함**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라고 표현하더라도, 사회복지제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피고인을 구금하더라도 사회복지제도에 따라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위 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대부분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그 표현 수정이 검토되어야 함

○ **소수 의견(4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에 '(사회복지제도 하에 해결불가능한 수준의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함)'이라는 괄호 문구 추가**

- 가해자 대부분이 보호자인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보호자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정서적 곤경을 수반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건에서 예상되는 불가피한 현상임
- 학대 아동 및 피해 가정에 대한 사회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에 의하여 부양가족에게 발생 가능한 곤경 해결도 충분히 모색 가능하게 되었음

바. 대유형 1 체포·감금, 대유형 2 유기·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수정

(1) 수정 사항 요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2) 수정 사항 설명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삭제하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추가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중 '상당 금액 공탁'을 삭제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추가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

○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화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 '집행유예 이상 전과'라는 표현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 명확히 함

○ '피고인이 고령'은 삭제

2.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가.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수정 방향, 수정안 의결 시기 심의 결과

○ 양형위원회 제112차, 제113차 정기회의에서 심의된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수정 방향,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설정 범위]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함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가목(상해 등), 라목(협박 등), 바목(강간 등),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차목(공갈 등),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에 대한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함

[수정 방향]

○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반영함

[유형의 정의 추가]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추가가 필요한 범죄군은, 각 양형기준에 맞게 아래 내용을 '유형의 정의'에 추가함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 내지 제○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목, ○목, 파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목, ○목, 파목(○목, ○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

○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나. 양형인자 검토 결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양형인자 추가 관련 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양형인자 추가 여부

아동학대범죄			양형인자 기설정 여부	상습범 설정 필요	신고의무자 설정 필요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나목	형법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다목	형법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라목	형법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마목	형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바목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아동학대범죄			양형인자 기설정 여부	상습범 설정 필요	신고의무자 설정 필요
	사목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아목	형법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제6조) ×(제7조)	○	○
	자목	형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의 죄 등	○(제6조) ○(제7조)	×	×
	차목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의 죄 등	○(제6조 단서) ×(제7조)	×	○
	카목	형법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제6조) ×(제7조)	○	○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6조) ○(제7조)	×	×
	하목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제6조 적용× ○(제7조)	×	×

○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추가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양형인자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폭력범죄, 성범죄, 공갈범죄 양형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특별가중인자 추가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양형인자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사항

○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 해당함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 **성범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범죄군(1-2 범죄군)에 해당함

- 1-2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다.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습범' 양형인자 추가 관련 사항

○ 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되므로, 이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

함

- 위 범죄군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표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관련 사항

○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 1-1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 **성범죄**

- 1-2 범죄군 분류에 따라 ①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②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정비함

Ⅲ.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적용 범위, 설정 대상 범죄군

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심의 내용

○ 2021. 12. 6. 제11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기본 원칙 설정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는 제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임
- 범죄군 전체에 관한 일률적·통일적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위원회 설립 후 14년간 이어온 양형기준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역형 양형기준과 같이 **개별적 양형기준을 선택**함

나.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징역형 양형기준을 전제로 그 양형기준에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중 특정 영역에 형종 선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개개 범죄군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징역형 양형기준에서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원칙과 동일하게, **양형 실무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함
-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함

라.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양형 실무 축적 후 재논의

-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범의 위험성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종전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발점이 다름
-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 만큼 빈번하나,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함

마. 원칙 정리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

	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 ⇨ 의견 일치

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을 규정함

○ 또한,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 이유 기재 의무도 면제

나. 즉결심판 사건: 적용 배제

○ 절차의 특수성

- 즉결심판 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심판하는 절차로서,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만을 다루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만한 엄격한 절차로 보기 어려움
- 형량 범위가 작아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거의 없음

다. 약식명령 사건: 적용 배제

○ 절차의 특수성

- 약식절차의 경우 검사가 청구한 서면심리에 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대심 구조가 아니므로 공정한 양형심리가 곤란함
-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양형인자 유무를 충분히 심리하기 어려움. 이러함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양형기준의 실효성 미확보

- 일정한 양식에 의한 재판서를 작성할 뿐,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업무 부담 급증

- 약식명령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약식명령 청구 및 심사 시에 모든 사건을 양형기준에 맞추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절차의 신속성은 크게 떨어지고, 약식명령 재판 담당 법관과 청구 검사의 업무량 과중으로 이어짐
-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큰 업무 부담의 증가임

라. 정식재판청구 사건: 적용 포함

○ 공판절차 진행

-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로 종결하므로 그 이유를 통해서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판절차회부 사건과 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야 함

-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이상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공판청구 사건 또는 공판절차회부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특수성

- 약식명령의 양형만 다투는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더욱 필요함
-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함

마. 구공판 사건: 적용 포함

○ 공소제기의 원칙적인 모습

- 구공판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벌금형 양형기준이 적용됨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3.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대상 ⇨ 최초 설정 대상 범죄군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가. 선정 기준

○ 벌금형의 빈도

- 벌금형 건수, 징역형 대비 벌금형 비율 등이 높은 사건을 가급적 선정함

○ 벌금형의 법정형

- 상한 3,000만 원 이상, 하한 1,000만 원 이상 등 고액 벌금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벌금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 벌금형에 따른 공무담임권 등 상실, 정지를 비롯한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범죄도 선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범죄 자체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

- 범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벌금형 양형기준도 완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선정 요소로 고려함

나. 범죄군 선정 개수 관련 고려 사항

○ 제8기 양형위원회 잔여 일정

- 제8기 양형위원회는 2023년 3월까지 ① 벌금형 양형기준 1개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②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 3개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2개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예정

○ 최초 설정의 중요성

-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최초 설정하는 벌금형 양형기준인 만큼 징역형 양형기준을 최초 설정할 때에 못지않게 신중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접근할 필요성이 높음

다. 최초 설정 대상 범죄군

○ **다수 의견(6인) :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초 설정함**

- 2019년 구약식 전체 498,472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81,554건(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46,588건

(9.35%)으로 매년 1, 2위를 놓치지 아니할 만큼 빈번함

- 벌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 벌금만 다투면서 항소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그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행위는 여전히 다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 또한 온존하는 상황임
-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무제한이고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등 비례원칙 위반을 주된 이유로 삼았기에 그 취지에 따라 이미 2021. 12. 10.「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범죄전력을 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고(의안 번호 2113848),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제 개정이 이루어져 위헌 결정 받은 가중처벌 규정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상당함
- 이번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설정 범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사회적 중요성을 띤 범죄를 포함하고,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 양형기준을 함께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 다수 의견의 경우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 **소수 의견(5인) :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최초 설정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 결정된 상황에서, 온전한 양형기준 설정에 어려움 있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하나, 국회 통과 여부 및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 및 그 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소장변경 및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기의 사건들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도 어려움
- 교통범죄는 대체입법이 이루어져 적용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차기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 논의함이 타당함
- 폭력범죄는 형법범 중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로서, 벌금형 설정 필요성은 교통범죄에 뒤지지 않음. 2019년 형법범 구약식 183,017건 중 폭행은 38,099건(20.82%)으로 1위, 상해는 18,816건(10.28%) 4위, 협박 5,330건(2.91%) 등 큰 비중을 차지함
- 기존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양형인자 등을 추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방법·결과·범행 후의 태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양형인자의 추출 및 적용이 가능한 범죄임
- 최근 사회적으로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한 요구되고 있고, 객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이 요구됨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원칙] - 소수 의견의 경우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폭력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4. 벌금형 양형기준의 양형자료 조사 범위 ⇨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5인): 구공판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 대상 양형자료 조사

- 아래 구공판 사건만을 대상으로 양형자료 조사를 하자는 제2 의견, 구약식 사건까지도 양형자료 조사를 하자는 제3 의견을 절충함
- 2017. 12. 이후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적어도 형량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 선고 사건만 조사하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존재로 인한 통계 왜곡을 피할 수 있음

○ 제2 의견(3인): 구공판 사건 대상 양형자료 조사

-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2017년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에 법정형 범위에서 온전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로도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고정한 채 형량만 바꿀 수 있는데,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양형이유를 적을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충분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양형자료조사 대상이 될 만한 양형이유 또한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장기간 존재해 왔음
-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형종과 형량 모두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정한 2017년 이전은 물론, 형량에 관한 불이익 변경금

지 원칙을 폐지한 2017년 이후에도 통계적 왜곡이 있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금액이 정식재판청구 사건 공판 절차의 양형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형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약식명령 발령 금액보다 상향하는 경우에만 양형 이유를 기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온전히 법정형 범위 전체를 고려하여 양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3 의견(3인): 구공판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 구약식 사건 대상 양형자료 조사**

- 실무상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이 구약식 처분되고, 구공판되는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한 사건들임. 설사 구공판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을 모으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중한 사건들만을 표본화 한 것에 불과함
- 한편, 전체 구약식 사건 중 약 10%가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므로 2018년 제1심 사건 중 약 51,000건(약 8%) 가량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이고, 나머지 약 16,000건(약 2.5%)만이 구공판 사건 중 벌금형 선고된 사건임. 만약 정식재판청구 사건까지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벌금형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의 대부분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이고,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뿌리는 구약식 사건에 있는바 전체 벌금형 사건의 극히 일부(약 2.5%)에 불과한 구공판 사건만을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서는 왜곡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될 우려가 있음

5. 검토 결과 요약

구분	다수 의견 (6인)	소수 의견 (5인)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폭력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를 구공판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 구약식 사건 중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관하여는, 행정적 사항이므로 따로 의결하지 않음

Ⅳ. 향후 일정

○ 일시 : 2022. 3. 14.(월) 오후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 검토